

보도참고자료

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

2000. 10

재정경제부
금융감독위원회
한국은행

○ ○ **< 목 차 >**

I. 추진경위

II.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내용 및 보완대책

- 1. 주요내용**
- 2. 보완대책**

III. 외환자유화 연기론에 대한 검토

- 1. 외환자유화 연기론의 골자**
- 2. 검토의견**
- 3. 외환자유화 연기시의 문제점**

IV. 종합의견

**<참고1> 거주자 거래의 유형별 변화내용 및 보완
대책(안) 적용**

<참고2>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

I. 추진경위

- 외환자유화 계획은 외환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외환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유입을 촉진하고
 - 개방경제체제하에서 타부문의 규제개혁과 보조를 맞추어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'98.6월 확정된 계획임

- ◇ 1단계('99.4.1) : 企業·金融機關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
 - ◇ 2단계(2000말) : 個人的 외환·자본 거래 및 기타 資本去來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

* 정부는 '98.6월 외환자유화추진 기본방침을 설정한 후 IMF, OECD 등 국제기구와 정책협의 추진

-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라 '98.9월 종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
 - '99.4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,
 - 동 법에서 2000년 말에는 개인의 외환거래 등에 대한 잔존 규제가 폐지되도록 일몰조항으로 규정화함으로써, 2001.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자동적으로 시행되도록 됨
- 그러나, 정부는 금년 10월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시 가져올 부작용을 감안,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유보(10.9 국회통과, 10.23 공포)
 -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“대외 채권회수 의무제도”的 유지

- 해지펀드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거래 제한
-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전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거래 제한 등

II.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내용 및 보완대책

1. 주요내용

- ◇ 지금까지 일정한도내에서 허용되었던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·해외이주비·해외예금 등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고,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예금 제한 등을 허용.

가.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

대외지급 자유화

- 해외여행경비(1만불), 중여성 송금(건당 5천불), 해외이주비(4인 가족 100만불)등 지급한도 폐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한도(2만불) 폐지

자본거래 자유화

- 해외예금 제한 폐지(개인 5만불, 법인 5백만불, 수출입기업 최고 5억불), 해외신탁 허용, 해외 증권취득 대상 및 절차 자유화

※ 해외부동산취득(기업 업무용은 이미 자유화됨, 개인은 주거용에 한해 30만불까지 자급가능) 및 해외직접투자(기업은 이미 자유화됨, 개인은 1백만불까지 가능)는 현행 신고수리제를 유지

- 위반시 벌칙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

나.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

단기 원화예금·신탁 제한 폐지, 장외 증권취득 등 자유화

2. 보완대책

- ◇ 금년 10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대외채권회수의무 유지 등의 보완대책에 추가하여,
 - 금년말까지 시행령·규정을 개정하여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 및 불법자금 유출입 증가에 대비한 절차적 관리방안을 마련

가. 사전적인 관리방안

1) 고액자금 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

-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·해외여행경비 형태 등을 통한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시 취득경위 등을 한국은행에 사전 보고토록 함

2) 대외채권 회수의무 유지

- 거주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고,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이를 제재

* 벌칙(외국환거래법)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
-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: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기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

3)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유지

- 대외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·영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확인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모니터링 원활화 및 불법자금 이동 억제 도모

나. 사후적인 관리방안

1)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

-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및 신탁자산 등은 연 1회 한국 은행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외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

2)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

- 중여성 송금, 해외여행경비등 대외지급 자료, 수출입·용역거래 자료, 해외예금 및 신탁 등 자유화되는 자본거래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불법외환거래 등을 적발·제재

3) 금융정보분석기구(FIU) 설치

-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 -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및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고액 외환 거래정보를 수집하고
 - 동 정보는 FIU의 분석을 거쳐 필요시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며 외국 FIU와 긴밀한 상호 정보교환채널 구축예정

다. 유사시 안전장치(Safeguard) 제도화(외국환거래법 제6조)

-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시행
 - 대외지급 정지 : 중여성 송금·해외여행경비 등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전면 지급 정지
 - 자본거래허가제 : 해외예금·증권투자 등을 허가제로 운영
 - 가변자본예치제(VDR) : 유출입되는 자금에 대해 일정부분은 무이자 예치의무 부과
 - 외환집중제 : 보유 외화를 은행 등에의 매각 의무 부과

III. 외환자유화 연기론에 대한 검토

1. 외환자유화 연기론의 골자

- ◇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과 관련, 일부에서 시행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, 연기한다 할지라도 금번 자유화 사항이 주로 거주자의 외환거래와 관련되므로 대외적으로 큰 문제 없다는 주장이 대두
- ① 2001.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,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
 - ②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예전이 불비한 상황에서는 전면 외환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
 - ③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으로는 급격한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에 불충분

2. 검토의견

①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문제

- 그간의 대기성 수요, 해외활동을 위한 예비수요 및 예금부분보장제·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실시로 외환자유화 이후 일부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있겠으나
 - 그동안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수준 이루어져서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형태로 이미 해외에 보유 (수출입기업의 해외예금 한도: 잔액기준 5억불, '00.6말 예치실적 15억불 추정)하고 있으며,
 - 개인의 경우 해외여행경비·해외이주비 등 실적은 허용 한도의 10% 가량만 소진

거주자의 해외지급 실적

	'96	'97	'98	'99	2000.1~8
해외여행경비(1인기준,불)	1,609	1,538	948	912	1,281
한도(1만불)대비 소진율(%)	(16)	(15)	(9)	(9)	(13)
해외이주비(4인기준, 천불)	160	200	80	144	120*
한도(1백만불)대비 소진율(%)	(16)	(20)	(8)	(14)	(12)

* 전년도 비율을 감안한 추정치

○ 특히 해외예금의 경우 국내외 금리차(3~4%)·외환매매수수료(1.0%)·환위험, 국세청·관세청 통보제 시행, 해외운용상의 애로, 해외이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본유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음

※ 예를들어, 원화 1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시 연간 이자는 7.5%(750만원)이나, 해외예치(예: 미국)시 연간 이자는 3.04%(304만원)으로서 이에 환전수수료 등을 차감하면 수령액은 198만원(세전)으로 국내 예금 대비 26% 수준

1억원 예치시 이자 수령액 비교(稅前, 환율 일정 가정)

구 분	원화예금(A)	외화예금(B)	해외예치(C)	C-A	C-B
금리	7.5% ¹⁾	6.82% ¹⁾	3.04% ²⁾	△446%p	△3.78%p
추가부담	-	환전수수료 ³⁾ (1.0%) (1.0% 적용)	환전수수료 ³⁾ (1.0%) 송금수수료 ⁴⁾ (2만 8천원)	102만 8천원	2만 8천원
수령이자액 (원화 재환전시)	750만원	575만원	198만원	△552만원	△377만원
		469만원	96만원	△654만원	△573만원

1) 국내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

2) 99년 말 미국 상위 10개 은행의 평균 수신금리

3) 일반 고객의 경우 1.0%

4) 해당금액의 0.1%(상한 2만원)+전신료 8천원

② 외환자유화와 관련된 제반 여건 문제

- 제2단계 자유화 조치로 인해 환율, 외환관리 및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중남미 국가와 같은 외환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,
- 중남미 국가의 경우는 일찌기 자본 및 노동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고, 외환통제가 미약하였으며
 - 특히, '94~'95년 경제위기시 경상수지 악화, 단기외채 및 은행 부실채권 급증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크게 불안한 상태에서
 - 고정환율제의 근간을 유지함에 따라 통화가치가 시장실세를 반영 하지 못하여 환율평가절하 압력이 누적된데다,
 - 정국불안, 미국의 대폭적 금리인상 등에 따른 대외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제 자본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임
- 반면, 우리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물가안정세가 계속 되는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되어 있으며,
 - 환율 등 주요 경제변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부실을 정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중남미의 경우와는 경제상황이 상이함
- 외환관리측면에서도 일부 중남미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관리·감독이 미흡하여 막대한 외채가 누적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였으나,
 -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·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단기외채 규모가 훨씬 작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
 - 한은에 설치된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

③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의 실효성 문제

- 고액자금 지급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, 국세청·관세청 통보제 등 사전·사후 관리수단은 지나친 해외송금 및 불법자금의 유출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
- 국세청은 외환거래별 고액자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과세자료로 활용
- 관세청은 '99.10월 거래자별로 외환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, '99.11월 최신의 정보분석기법을 제공하는 정보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음
 - '99.4월부터 외환전산망의 가동으로 관세청의 전산망 자료와 교차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급증

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98년	99년	2000(1~9월)
98,956	913,827	1,307,171

- * 지금·영수의 합계, 유형은 휴대반출·환치기·가격조작·무역가장·채권미회수등
- 또한, 금융감독위원회(금융감독원)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음
- 만일, 외환의 유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유사시 안전장치(Safeguard)를 발동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

<예시> ① 해외여행경비 및 증여성 송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→ 한도제 도입으로 지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전면 제한
② 해외예금을 위한 유출이 급증하는 경우 → 협약제를 통하여 예금의 일부 또는 전면 제한

3. 외환자유화 연기시의 문제점

- 개방경제체제에서는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
 - 외환자유화는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수차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바
 - 이를 유보할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
 - 외국인증권투자자금(10.26현재 521억불)의 유출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
 - 특히, 외환자유화는 IMF와 정책협의를 통하여 의향서(LOI)에 반영된 사항으로, IMF는 금년 10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시 일부 사항에 대한 유보와 관련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보임
 - ※ OECD 국가중 개인의 자본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평가리, 폴란드, 터키에 한함
- 한편, 자유화 조치의 유보는 금융비용 증가·대외활동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 및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 우려

IV. 종합의견

- 제2단계 외환자유화('98.7월 일부거래 조기 자유화 조치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3단계)는 '98년부터 3년에 걸쳐 수차례의 공청회·금발심·전문가회의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각종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
- 금번 제2단계 자유화에 따른 잔존 규제의 추가완화에 따라 자본유출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으나, 이는 사전·사후적인 보완방안을 척실히 시행하는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며
 - 또한 외환시장 규모 확대, 자산운용 다양화·경비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중장기적 이점을 고려하고, 자유화 유보에 따른 대외적인 신인도 저하 등 심대한 손실을 감안하는 경우 자유화 추진은 불가피
- 그동안 구축하여온 외환전산망·조기경보시스템(EWS)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여 유사시에는 안전장치(Safeguard)를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추가 자유화시에도 안정적인 외환관리가 가능함
- 한편, 정부는 제2단계 자유화 시행에 대비, 자유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경부·국세청·관세청·한은·금감원 등 관련기관으로 「외환자유화추진 점검반」을 구성하여 향후 일정기간 운영해 나갈 계획임

<참고1> 거주자 거래의 유형별 변화내용 및 보완대책(안) 적용

	현 행	자유화	보완대책
여행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만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도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보 ○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도입
해 외 체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재자 (유학생) - 정착비 5만불(2만불) - 체재비 월 1만불(3천불) ○ 지정거래은행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도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보 ○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○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도입
해 외 이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0만불 (4인가족 기준) ○ 10만불 초과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도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거래은행제 도입 ○ 일정금액 초과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제 유지
증여성 송 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당 5천불 ○ 1만불 초과 국세청 통보 ○ 지정거래은행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도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보 ○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○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 보고제 도입
해외예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 : 연간 5만불 ○ 일반법인 : 5백만불 ○ 수출기압 최고 5억불 ○ 지정거래은행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유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보 ○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○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 보고제 도입 ○ 일정금액 초과 연1회 한국은행 잔액보고제
신 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면 제한 		
해외부동산 취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수리 - 기업 : 업무용 부동산 허용 - 개인 : 30만불이내에서 주거용 주택 허용(해외체재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유지 	

<참고2>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

□ 만일의 경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Safeguard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

유형	주요내용	시행요건
대외결제·거래의 일시 정지 (제6조 1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·영수,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천재지변·전시·사변,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,
외환집중제 (제6조 1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은·정부기관·외평기금 등에의 예치·보관·매각·의무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자본거래허가제 (제6조 2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본거래시 정부 허가를 반도록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수지·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
가변예치의무제 (제6조 2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본거래시 당해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정비율을 한은·외평기금 등에 무이자로 예치도록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본이동으로 인해 통화·환율 등 거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공통 조항	시행기간 (제6조 3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서 시행하되 연장 가능
	제외대상거래 (제6조 4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
	시행방법 (시행령 제1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거래 및 기간,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재경부장관 고시로 시행